

# 判例教室

外国事件

## 實施不可能한 特許發明에 의거해서 他人에 對해 權利侵害를 理由로한 損害賠償의 請 求等을 한 것은 안된다는 뜻을 判示한 事例

(東京高裁 59. 7. 17 判決 : 昭和 54 年(ネ) 2813 號)

### 1. 事件概要

控訴人은 本 判決當時에는 存續期間이 滿了한 本件 特許權의 特許權者로서 있는 者에게 있고 그 特許發明은 비닐 芳香族 重合體組成物의 製造方法에 關係있으며 同 組成物의 製造에 使用하고 있는 1,4 포리부타디엔의 비닐 含有量이 10%以下로서 있는 것을 要件의 하나라고 한다.

控訴人은 被控訴인이 製造販賣하는 耐衝擊性 포리부타디엔의 製造方法이 控訴人の 特許權을 侵害한 것으로 損害賠償等을 請求했지만 原審에서 그 請求를 棄却하는 判決을 받았으므로 原審判決의 取消를 求해서 控訴하고 控訴審에 있어서 그 損害賠償以外의 請求를 取下했다.

### 2. 判決要旨

控訴審 判決은 下記의 理由에 의해 本件 控訴를 棄却했다. 즉, 本件特許의 明細書의 請求範圍中 1,4포리부타디엔 中에 포함된 비닐含有量의 10%以下라고 말한 10%가 어떤 형태의 方法에 의해서 計量된 10%로서 있는가에 對해서는 請求範圍에 있어서는 물론 發明의 詳細한 說明中에도 이것을 示唆한 것은 아무것도 發見하지 못했다. 그런데 書證 및 證人の 證言에 의하면 비닐 含有量이 10%로 있는 것을 客觀的으로 確

定하는 方法은 本件發明의 出願當時 發見하지 못했던 것으로 있으므로 이같은 測定法에 따라서 測定한 10%로 있는가라고 한것이 記載되어 있지않은 本件 特許發明에 있어서는 10%라고한 比率을 定함에 뛰어한 理由가 없고 이 點에 있어서 이미 이것을 實施하는 것이 不可能하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을 수 없으므로 本件 特許權이 權利로서 成立하고 있는 어떤 理由를 갖고 本件 特許權에 의거해서 他人에게 그 權利를 侵害하는 것의 方지 및 侵害를 理由로 하는 損害賠償請求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.

### 3. 論評

이 判決은 特許發明의 構成要件의 一部에 對해서도 이것을 實施하는 手段이 出願當時에 確定되어 있지 않은 사정의 原因으로서 上記의 實施手段에 對해서 明細書中에 記載 또는 示唆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發明은 實施가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特許權이 權利로서 成立하고 있는 어떤 理由를 갖고 他人에 對해 方지請求 및 損害賠償請求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을 判示한 것으로 생각되며 注目할 判決로서 있다. ◈